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
결 정

사 건 202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채 권 자 양 ()
전주시

정본입니다.

2022.04.08

법원주사보 최순기



송달장소 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
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필 사무소
(만성동 1366-9)
송달영수인 : 전종필

채 무 자 ()
익산시

- 제 3 채 무 자
1. 농협은행 주식회사 (110111-4809385)
서울 중구 통일로 120 (충정로1가)
대표이사 권준학
 2. 주식회사 전북은행 (210111-0000043)
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(금암동)
대표이사 서한국
 3. 삼성증권 주식회사 (110111-0335649)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(서초동)
대표이사 장석훈
 4.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(110111-0005953)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(서초동)
대표이사 전영목
 5.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(110111-0014970)
서울 종로구 종로 1 (종로1가)
대표이사 신창재
 6.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(110111-0003204)
서울 영등포구 63로 50 (여의도동)
대표이사 여승주

주 문

1.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.
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.

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

결 정

사 건 2022카불: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

채 권 자 양 ()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

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:전종필)

채 무 자 ()

익산시

주 문

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.

이 유

채무자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증서 2021년 제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
증서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
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
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
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2022. 10. .

사법보좌관

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